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99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33인

나. 발 의 일 : 2025. 3. 11.

다. 회 부 일 : 2025. 3. 12.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제주4·3은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적 진실에 대한 기억임과 동시에 치유를 위한 화해와 상생의 역사이다. 그 역사를 기록한 제주 4·3 사건 기록물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고, 4·3희생자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전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속에 2000년 국회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이념 대결,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고유한 기록 자료이면서, 동시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

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록으로서 제주 4·3사건 기록물은 국제사회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4·3의 '진실과 화해, 상생'의 정신이 우리 국민은 물론 인류가 아픔을 딛고 극복·치유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 4·3 사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 4·3 사건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제주 4·3 사건 기록물은 제주4·3이 발발한 당시부터 최근까지 축적된 공공기관 생산 기록, 군과 사법기관의 재판기록, 미국 생산기록 등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을 담은 문서, 편지, 음성 및 영상 기록, 도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한 억압과 오랜 탄압에도 4·3희생자와 유족들

이 끊임없이 이어간 증언 등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물’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 운동의 원천이 되었고 민간에서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진상규명 운동을 거쳐 국회의 특별법 제정,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보고서 확정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이라는 성과의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제주도민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를 포용하고 공동체 회복에 온 힘을 다했던 노력이 담긴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은 국가폭력의 극복과 해결을 담은 총체적 기록물로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이처럼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해결 과정은 20세기의 비극에 대한 21세기적 최선의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지향한 제주도민의 노력은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2023년 11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 4·3 사건 기록물에 대한 202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4·3의 ‘진실과 화해, 상생’의 정신이 우리 국민은 물론 인류가 아픔을 딛고 극복·치유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유네스코의 제주 4·3 사건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한다.

Ⅲ.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주 4·3 사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도 손색이 없음을 밝히고, 해당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국회가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지원할 것을 천명하려는 것임.
- 제주 4·3 사건 기록물은 제주 4·3 당시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희생자 유족 증언,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시민운동 기록,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 등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을 담은 문서, 편지, 음성, 영상기록, 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제주 4·3 사건 기록물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증거로 활용되었고, 희생자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전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속에 2000년 국회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처럼 제주 4·3 사건 기록물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술, 진상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총체적 기록물로서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

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의 큰 의미가 있음.

- 이에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가치를 천명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제주 4·3 사건 기록물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봄.
- 다만, 결의안이 발의되고 한 달이 지난 2025년 4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안전으로 상정되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므로 동 결의안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79
